

충정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충정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고시취지

- 충정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함.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가. 충정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4	미근동 20-1	미근동 99-1	일반도로	'02.5.10 (서고제178호)	
소로	3	1	4	국지 도로	110	미근동 96-1	소 2-1	일반도로	'02.5.10 (서고제178호)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③	공공공지	미근동 22-3	113	'02.5.10 (서고제178호)	특별계획구역③에서 확보(기부채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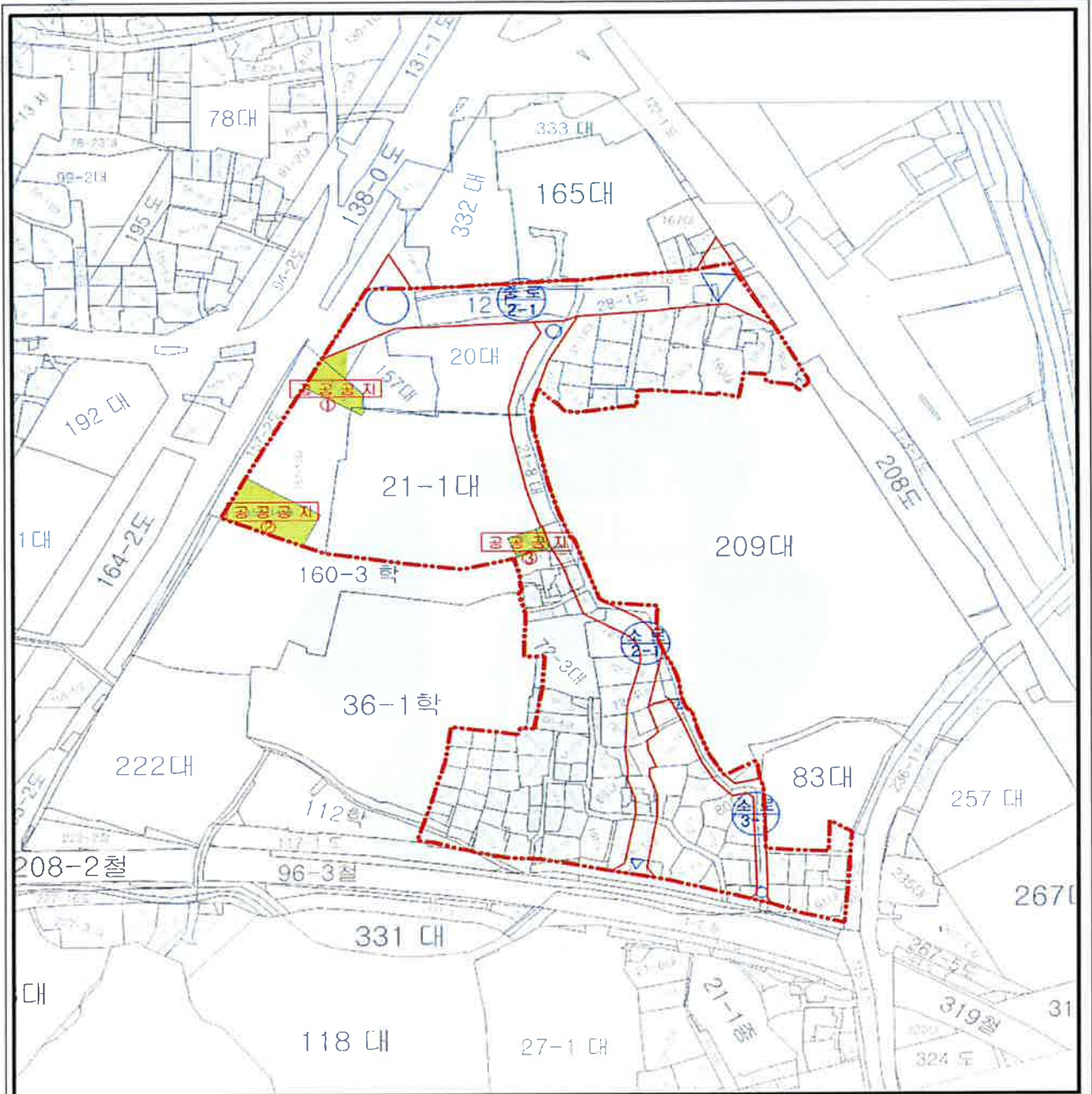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S=1,000 Scale 도면)

4) 관련도서 :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02-330-8278)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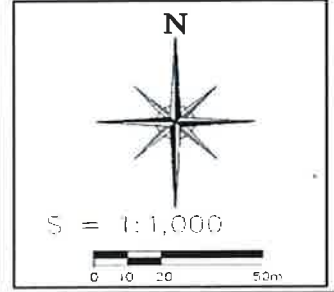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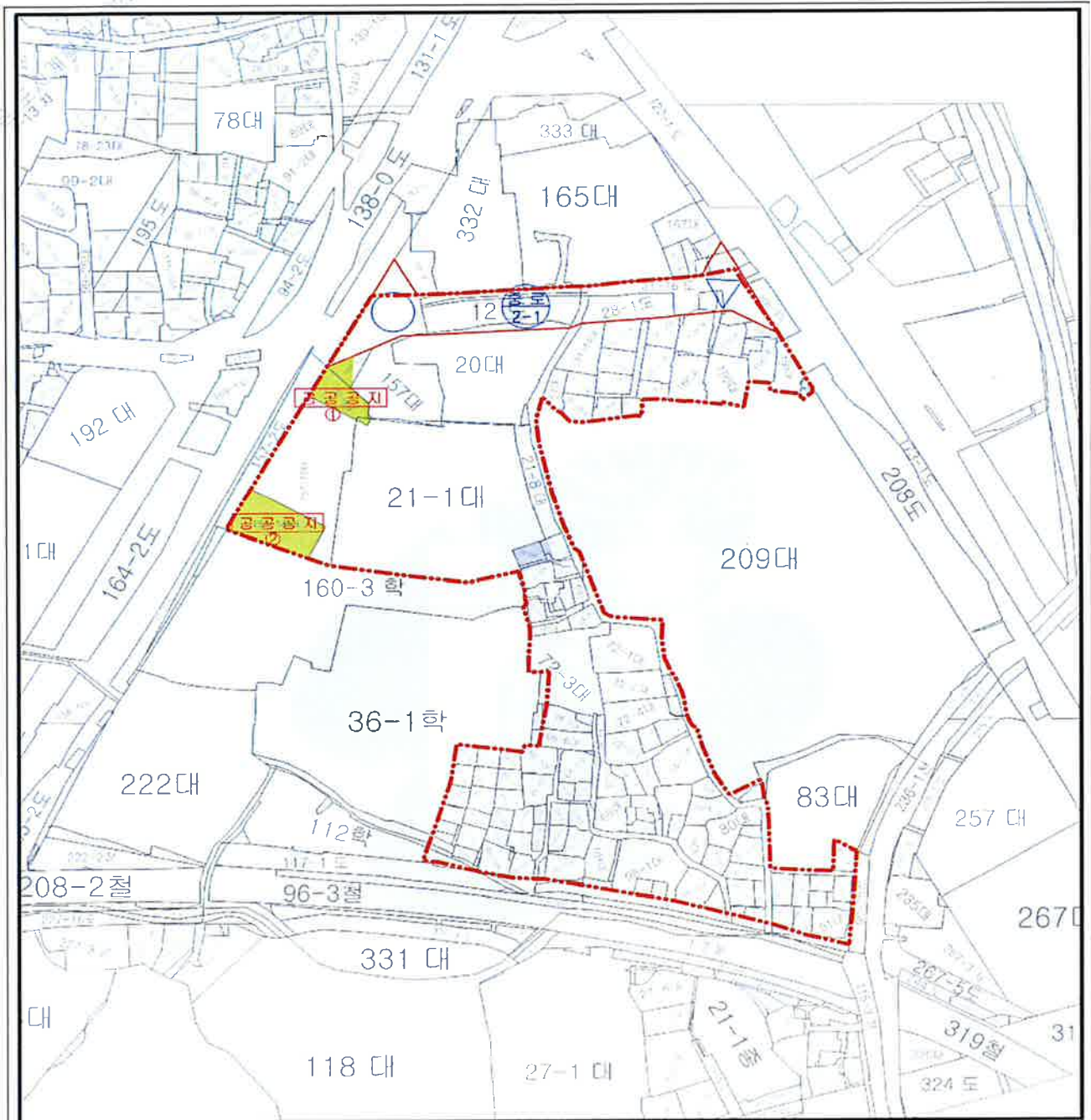
총 정
지구단위계획(변경)(안)

도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기정) 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공공공지		



○ 변경



총 정
지구단위계획(변경)(안)

도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